

2026

청원경찰법, 경비업법
경찰관 직무집행법
청원경찰 관계법령

엠북 경찰/경비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PDF 전자책
- ✦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✦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
- ✦ 2시간 7분 완성, 대전/충남 청원경찰

도서명 : 대전, 충남 청원경찰 관계법령

ISBN : 979-11-7393-197-0

발간일 : 2026-02-23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20,000원



대전, 충남 청원경찰 관계법령

제1편 청원경찰법(p3)

제2편 경비업법(p32)

제3편 경찰관 직무집행법(p89~115)

제1편 청원경찰법

[목차]

제1절 총칙(p4)

제2절 직무와 배치(p5)

제3절 임용 등(p6)

제4절 경비(p13)

제5절 근무(p15)

제6절 무기휴대(p21)

제7절 감독 등(p26)

제8절 면직 등(p28)

제9절 벌칙(p31)

[약어]
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청장은 경찰청장
- 시도청장은 시·도경찰청장
- 서장(관할서장)은 **사업장 소재지**를 관할하는 경찰서장
- 사업장은 기관, 시설, 사업장, 장소
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
[비고]

- 하늘색 형광펜은 암기코드
 - 노란색 형광펜은 빈출 지문(중요도 최상)
 - 붉은색은 빈출 지문(중요도 상)
 - 하늘색은 빈출 지문(3~4회)
 - 검은색은 1~2회 출제 지문
 - 회색은 출제된 적이 없는 등 중요도 낮음
- * 출제 횟수는 경비지도사 시험 기준

[참고]

- 지방경찰청(장)은 2021년부터 시도경찰청(장)으로 명칭 변경
- 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제1절 총칙

1. 목적

- 청원경찰의 직무, 임용, 배치, 보수, 사회보장을 규정해,
-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

2. 정의

가. 청원경찰

- 다음 기관의 장, 시설/사업장 경영자(청원주)가 경비부담 조건으로 경찰 배치 신청시 **경비를 위해 배치**

1) 국가기관/공공단체, 그 관리하 **중요 시설/사업장**

2) **국내 주재 외국기관**

3) (대통령령이 아니라) 부령

- **선박, 항공기 등 수송시설**

- 금융/보험

- 언론, 통신, 방송, 인쇄

- 학교 등 육영시설

- **의료기관**

- 공공 안녕질서, 국민경제 위한 고도 경비 필요 **중요 시설, 사업체, 장소**

- 단, 사회복지시설 제외

나. 청원주

- 청원경찰 배치 결정 받은 자

제2절 직무와 배치

1. 직무

가) **청원주와 배치 기관/시설/사업장** (시도청장이 아니라) **서장 감독하 배치**

구역만의 경비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

나)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 수행

다)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금지

라) 모든 보고는 관할 서장에 서면 보고 전 지체없이 구두 보고하고 지시 따름

2. 배치

가) (부령이 아니라) 대통령령에 따라 (문서로) 신청

-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및 배치계획서 각 1부 첨부, 서장 거쳐 (청장이 아니라)

시도청장에 제출(신청)

- 둘 이상 시도에 배치시 주사업장 관할서장 거쳐 한꺼번에 신청 가능

나) (청장이 아니라) 시도청장은

- 배치신청받은 때 지체없이 결정해 신청인에 통지

- 기관장/경영자에 배치 요청 할 수 있다(해야한다 아님)

(참고) 시도청장의 권한

- 청원경찰 배치결정, 무기휴대여부 결정, 임용승인

다) 청원주는 신규배치시 배치지, 이동배치시 (전입지 서장이 아니라) 종전 배치지

관할 (시도청장이 아니라) 서장에 통보

- 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일 때 전입지 서장에 통보

제3절 임용 등

- 임용자격, 임용방법, 교육, 보수, 징계는 (부령이 아니라) 대통령령으로 정함

1. 임용

가. 임용권자

- (서장이 아니라) **청원주가 임용**
- **임용시 미리** (청장이 아니라) **시도청장 승인받음**

나. 임용승인신청(서)

1) 첨부 서류 (각1부)

- 이력서
- 주민등록증 사본
- 신원조사 필요시 민간인 신원진술서
- 최근 3개월내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나 취업용 건강진단서
- 기본증명서
- 단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불요

2) 시도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병적증명서 확인

-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않으면 서류 첨부하게 함

다. 임용자격

- 1) 18세 이상
- 2) 신체 건강, 팔다리 완전
- 3) 교정 시력 포함 양쪽 눈 각각 0.8 이상

(참고)

- (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) 국가공무원법상 **결격자는 임용못함**
- **피한정후견인은 결격아님**
- **몸무게는 임용조건 아님**

- 공무원 결격사유는

가) 피성년후견인

나) 파산선고 받고 미복권

다) 금고 이상

- 집행 종료(의제)/면제 5년 미경과
- 집행유예 종료 2년 미경과
- 선고유예 중

라)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상실/정지

마)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, 배임으로 300 이상 벌금 확정 2년 미경과

바) 성폭력, 정보통신망법상 다음 범죄, 스토킹으로 100 이상 벌금 확정 3년 미경과

- 음란한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,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, 공공연하게 전시
- 공포심,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,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

사)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나 아동/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 미경과

- 금고 이상 집행 종료(의제), 면제된 날
-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된 날
- 벌금 확정된 날
- 치료감호 집행 종료, 면제된 날

- 징계로 파면처분이나 해임처분 받은 날
- 아) 징계로 **파면시 5년**, **해임시 3년** 미경과

라. 임용방법: **청원주는**

- **배치 결정 통지 30일내** (임용하는 것이 아니라) **시도청장에 임용승인 신청**
- **임용/퇴직시 10일내 서장 거쳐 시도청장에 보고**

2. **교육**

가. **교육**

- **청원주는 임용된 자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(총 76시간) 교육받게 함**
- 단, (청원주의 사정이 아니라)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면 우선 배치하고
임용 1년내 교육받게 함

나. **교육 면제**

- **경찰공무원/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 퇴직자를 3년내 임용시**

다. **교육과목/수업시간표(부령)**

- 1) 정신교육 8
- 2) 학술교육: 형사법 10, 청원경찰법 5
- 3) 실무교육 44
 - 경무: 경찰관직무집행법 5
 - 방법: 방법업무 3, 경범죄처벌법 2
 - 경비: 시설경비 6, 소방 4

- 정보: 대공이론 2, 불심검문 2
- 민방위: 민방공 3, 화생방 2
- 기본훈련 5
- 총기조작 2
- 총검술 2
- 사격 6

4) 술과: 체포술 및 호신술 6

5) 기타: 입교/수료/평가 3

(비교) 법학개론, 민사소송법, 민간경비론은 교과목 아님

3. 복무

가. 다음 준용

1) (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) 국가공무원법 중

- 복종의 의무
- 직장 이탈 금지 의무
- 비밀 엄수의 의무
- 재직 중 및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

2) 경찰공무원법 상 거짓 보고 등의 금지

- 직무에 관해 거짓 보고나 통보못함
-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못함